

의안번호	2216355
의 퇴 인	유용원· 부승찬의원
회 답 일	2026.6.12.
추계번호	26D0454

국방인공지능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방인공지능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9,300만원(연평균 1,86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국방인공지능위원회(안 제6조)	6.0	6.0	6.0	6.0	6.0	30.0	6.0
자문단(안 제9조)	12.6	12.6	12.6	12.6	12.6	63.0	12.6
합계	18.6	18.6	18.6	18.6	18.6	93.0	1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기술 및 국방인공지능사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국방인공지능위원회)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및 국방력 강화와 국방인공지능사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됨(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국방부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국방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방위사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업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제4항)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둠(제12항)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3항)	
3	안 제9조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위원회는 국방인공지능 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2항) 위원회는 국방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음(제3항)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4	안 제11조 (국방인공지능 정책센터)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 협력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설치할 수 있음(제1항) 국방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3항)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5	안 제12조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둠(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3항)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6	안 제15조 (국방인공지능기술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국방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그 밖에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위하여 민간 부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7	안 제16조 (국방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안 등)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학습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품질 확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8	안 제17조 (민간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	국방부장관등은 무기체계등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공지능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하여야 함(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무기체계등의 소요 결정 시 민간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여부가 체계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18조 (국방인공지능의 활용 촉진)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활용을 전 국방 분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국방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2항)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0	안 제19조 (국방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 등)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인공지능 관련 법률, 정책 및 기술 동향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20조 (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21조 (국방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및 시스템의 실증, 시험, 평가 및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 실증기반을 구축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22조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시험, 평가 및 활용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방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	등에 필요한 국방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14	안 제23조 (국방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국방부장관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국방인공지능 개발 및 운용 환경 조성, 국방인공지능의 활용이 국가 안보 및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 지원, 국방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국방인공지능 관련 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 제정 및 시행 지원, 국방인공지능 관련 단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그 밖에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15	안 제24조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의무)	국방부장관등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인공지능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6	안 제25조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국방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7	안 제26조 (국방인공지능 실태조사 등)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용 현황, 인력 현황,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	-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은 국방부 및 관계 기관이 민관 의 견수렴을 통해 직접 작성할 예정으로, 연구용역 등 추가재 정소요 없음
2	안 제6조 (국방인공지능위원회)	○	- (일부추계) 국방인공지능위원회 구성·운영비 추계 - 제12항 관련, 지원단 설치 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행정기관위원회 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자문위원회 등에는 지원단 등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원단 관련 설 치여부 및 지원단의 규모 등 구체적 계획 부재로 추가재정 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3	안 제9조 (분과위원회 등)	○	- (일부추계) 자문단 구성·운영비 추계 - 제1항 및 제2항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재량규정 으로 구성·운영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고 있고, 국방부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 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4	안 제11조 (국방인공지능 정책센터)	-	- 기 운영 중인 공공기관을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 할 계획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5	안 제12조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	- 기 운영 중인 공공기관을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로 지 정할 계획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없음
6	안 제15조 (국방인공지능기술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	- 국방인공지능기술, 국방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국방인 공지능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 등과 관 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 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 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그 밖에 국방인공지능기술 관 련 표준화 사업을 추진·확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할 수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 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7	안 제16조 (국방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안 등)	×	- 국방인공지능의 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학습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공유 관련 시책 수 립 등 연구용역 추진, 관련 사업의 추진·확대 가능성이 있 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 정하기 곤란함
8	안 제17조 (민간 인공지능기술의	×	- 무기체계등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공지능기술을 적극적 으로 발굴·도입 관련 시책 수립 등 연구용역 추진, 관련 사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도입 및 활용)		업의 추진·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9	안 제18조 (국방인공지능의 활용 촉진)	×	- 국방인공지능의 활용을 전 국방 분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연구용역 추진, 관련 사업의 추진·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19조 (국방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 등)	×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인공지능 관련 법률, 정책 및 기술 동향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1	안 제20조 (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	- 기 추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가 재정소요 없음 - 국방 AI 인재양성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210.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12	안 제21조 (국방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	- 국방인공지능기술 및 시스템의 실증, 시험, 평가 및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 실증기반 구축·운영에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3	안 제22조 (국방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	-	- 기 추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가 재정소요 없음 - 국방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 2026년 6.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14	안 제23조 (국방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	- 신뢰할 수 있는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등 연구용역 추진, 관련 사업의 추진·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5	안 제24조 (국방인공지능시스템 의 안전성 확보 의무)	×	- 안전한 국방인공지능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등 연구용역 추진, 관련 사업의 추진·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6	안 제25조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 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국방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지원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17	안 제26조 (국방인공지능 실태조사 등)	×	- 국방 분야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용 현황, 인력 현황,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작성·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국방인공지능기술 표준화 및 상호운영성 확보,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안, 민간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 국방인공지능의 활용 촉진, 국방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 실증기반 조성, 신뢰기반 조성,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과 향후 관련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추계에서 제외함
-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관련 비용은 국방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방인공지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 제정안에 따라 국방인공지능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가정함
 -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국방부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국방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라 연간 회의개최횟수는 2회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국방인공지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28~2032년

(단위: 건, 명,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 수	10	10	10	10	10	-
연간 회의개최건수	2	2	2	2	2	-
회의참석수당 단가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6	6	6	6	6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자문단 회의참석수당

-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자문단은 7명으로 구성되며, 연간 회의개최횟수는 6회로 가정함

- 제정안에서 위원회는 국방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국방부는 국방인공지능추진점검 등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회의개최횟수는 6회, 추계기간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자문단 회의참석수당: 2028~2032년

(단위: 건, 명,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자문단 위원 수	7	7	7	7	7	-
자문단 회의개최건수	6	6	6	6	6	-
회의참석수당 단가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12.6	12.6	12.6	12.6	12.6	6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방인공지능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국방인공지능위원회	6.0	6.0	6.0	6.0	6.0	30.0
자문단	12.6	12.6	12.6	12.6	12.6	63.0
합계	18.6	18.6	18.6	18.6	18.6	9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